

오리 계열화사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

출처 : (사)한국오리협회 (2017.8)

운영배경

- 계열화비율이 95%가량인 오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체계를 구축

* 관련근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불공정 거래행위개선)

운영방안

- 운영기간 : 2017. 8. 11일부터 연중 상시 (평일 09:00 ~ 18:00)
- 신고대상 : 오리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소속(계약) 농가
- 신고내용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준수사항)의 위반내용 등
- 신고처 : 한국오리협회 (전화 02-585-5286)
- 민원처리 : 신고접수 → 관할 시·도 통보 → 시·도 조사 → 농식품부 검토

신고대상

계열화사업자

1.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수량을 거부하는 행위
2. 사육경비를 감액하는 행위
3. 사육경비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사육자재를 공급하는 행위
5.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가축 등의 검사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6.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7.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등

계약농가

1. 가축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출하를 기피하는 행위
2.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축의 품질 또는 출하기일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3. 사육경비 등을 인상하여 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